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시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정유미

전화 032-325-2018 / 팩스 032-320-4382

보도자료

2021. 6. 11.(금)

[성의 있는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 2건]

제 목

- 공소시효 완성 20일 前 십억대 사기범 구속

- 억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 사망 후 피해사실 밝혀 사기범 구속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부천시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정진, 최재봉)는 어제(6. 10.)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수십 억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에 대해 성의를 다해 수사함으로써 피의자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 주었음

① 80대 노부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편취 후 7년간 도피 중인 사기사범을 검거해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시효를 20일 남기고 피의자를 체포, 구속 기소함

② 법률 지식이 부족한 80대 노인을 상대로 약 10년에 걸쳐 약 3억 원을 편취한 사기사범에 대해, 피해자 사망 후에야 유족이 유품 정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여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였으나 계좌추적 등 성의를 다한 수사 끝에 구속 기소함

▣ 검찰은 최근 자녀와 떨어져 독거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제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 향후에도 성의 있는 수사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①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A○○(65세, 건설업체 운영)

- '08. 3.~'11. 6. 피해자들(당시 83세, 81세)로부터 김포시 소재 토지를 3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 12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오히려 '건설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머지 잔금과 함께 갚겠다'는 등으로 속여 6억 3,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8억 3,000만 원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② B○○(53세, 건물청소)

- '11. 7.~'20. 2.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인연으로 알게 된 피해자('20. 4. 사망, 당시 87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법원에서 회수할 공탁금 등 자산이 있고 해당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소액의 돈만 빌려 주면 공탁금 등을 회수하여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존재하지 않는 판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만들어 보내주면서 믿게 하는 방법으로 695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1,000만 원 편취 [사기]

② 수사 경과

가. 피고인 A○○ 사건

- '14. 7. 체포영장 발부(피의자 검찰 2회 조사부터 불출석) 및 기소중지
- '21. 5. 21. 피해자의 변호인, 수사재개 요청(공소시효 완성일 : '21. 6. 22.)
- '21. 5. 31.~ 6. 2. 통신영장 2회 및 압수영장 1회 집행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등록된 주소지도 없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의자의 남편 및 딸의 통화내역을 정밀하게 분석, 역추적하여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21. 6. 3. 피의자 체포

○ '21. 6. 4. 구속영장 청구

※ 검사는 피의자 심문 기일에 피해자가 직접 방청하여 피해 경위를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

○ '21. 6. 5.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 구속영장 발부

○ '21. 6. 10. 구속기소

나. 피고인 B○○ 사건

○ '20. 12. 불구속 송치(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

※ 총 피해액 3억 1,000만여 원 중 대부분인 2억 4,800만여 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나 차용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도 사망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됨

○ '21. 4.~5. 계좌추적 및 피의자 조사 등

※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사망하기 두 달 전까지도 피해금을 송금하였고, 수중에 돈이 없을 때에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송금,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음

○ '21. 5. 31. 구속영장 청구

○ '21. 6. 2. 구속영장 발부

○ '21. 6. 10. 구속기소

3 수사 의의

- 피의자가 기소중지된 상태로 차명폰을 사용하여 장기간 도피하는 바람에 공소시효 완성에 임박하여도 사건 해결에 이르지 못한 사건, 10년 넘게 피해를 보면서도 자녀와 따로 떨어져 독거하는 바람에 사망 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 등에서 성의를 다한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임
- 검찰은 향후에도 고령의 독거 노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